

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

「자격기본법」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상호	대표자	등록번호	자격명	등급	폐지사유
주식회사 케이에스산업 안전협회	김재형	2021-0018 63	기업법정교육관 리사	단일등급	용도가 없음

2026. 08. 04.

한국직업능력연구원